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북부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서인선
전화 02-713-4866

보 도 자 료
2022. 12. 23.(금)

제 목

사법질서를 방해한 위증사범 집중수사
- 2개월 간 총 26명 적발, 위증교사범 1명 구속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북부지검 공판부(부장검사 김재화)는 '22. 10. 중순경부터 **약 2개월 간 사법질서를 방해한 위증사범을 집중수사하여, 총 26명을 적발해,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,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**

※ '22. 9. 10.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내로 명시됨

- 수사결과, 범행 동기로는 인정·친분(9명), 공범은닉(2명), 자신의 잘못 축소·은폐(5명), 경제적 목적(3명), 합의 후 심경변화(7명) 등이 있었음
- 서울북부지검은 변화된 사법 환경에서도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증 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

I

집중수사 배경

-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범이 처벌을 면하는 한편,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하고, 국가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
- 특히, 공판중심주의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,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증인 진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
- 그럼에도, 큰 죄의식 없이 경제적 이해관계, 개인적 친분에 따른 의리나 정 때문에, 또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, 심지어는 대가를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 등 위증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
- 금년 9월 수사개시규정 개정으로 위증이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내로 명시됨에 따라, 서울북부지검은 법정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사안의 특성상 검찰만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증사범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함

II

집중수사 결과

- '22. 10. 중순~12. 중순경 약 2개월 동안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, 총 26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하여,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,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 위증교사 등 관련 범행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
- 위증 유형별 수사 현황

원사건 유형 \ 동기	인정·친분	공범은닉	자신의 잘못 축소	경제적 목적	합의 후 심경변화	비율
사기 등 경제범죄	-	1	2	2	5	38%
상해 등 폭력범죄	6	-	1	-	2	35%
기 타	3	1	2	1	-	27%
비율(%)	35%	8%	19%	11%	27%	100%

- 원사건 유형별 위증사범 적발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, 폭력 및 경제 범죄에서의 위증 비율이 높았고, 각 위증범행의 동기를 분석한 결과,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35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
- 원사건의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'인정과 친분에 의한 위증'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, 위증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III

대표적 사례

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추가 대가까지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례

- A는 공범들과 공동하여 B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휴대폰을 갈취한 사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(공동공갈)죄로 기소
- A는 재판 과정에서 B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한 다음 '재판이 잘 끝나면 돈을 줄테니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라'는 취지로 추가 대가를 약속하며 위증하도록 교사하고, B는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허위 증언
- 위증 교사한 A는 구속 기소, 허위 증언한 B는 불구속 구공판

② 민사상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한 사례

- A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여 대부업법위반죄로 기소
- B는 사실 21억 원을 A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
- 허위 증언한 B를 불구속 구공판

③ 친구의 범행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한 사례

- A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
- A의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 B가 A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'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'고 허위 증언
- 허위 증언한 B를 약식 기소

④ 가족의 범행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한 사례

- A는 사실혼 배우자인 B와 그녀의 아들 C를 때려 폭행죄 등으로 기소
- A의 범행 현장에서 폭행을 목격한 친누나인 D가 동생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'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'라고 허위 증언
- 허위 증언한 D를 약식 기소

⑤ 지인을 위해, 목격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사례

- A가 B를 손으로 때리고 아이패드를 던져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
- A의 범행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지인 C가 '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, 아이패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던진 적도 없다'고 허위 증언
- 허위 증언한 C를 약식 기소

⑥ 자신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한 사례

- A는 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죄로 기소
- B는 자신이 먼저 불펜으로 A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찍어 다툼이 발생해 A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임에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
- 허위 증언한 B를 불구속 구공판

⑦ **공범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한 사례**

- A는 B와 공모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해 보조금관리법위반죄로 기소
- 공범 B는 자신의 정식재판청구는 취하한 뒤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
- 허위 증언한 B를 약식 기소

⑧ **도우미 알선 사실을 숨기기 위한 노래연습장업주와 도우미의 허위 증언 사례**

- A는 대가를 받고 노래방연습장업주인 B에게 노래방 도우미 C를 소개하여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기소
- B는 “A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받은 적이 없다”라고, C는 “B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接客행위를 한 적이 없다”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
- 허위 증언한 B, C 불구속 구공판

⑨ **합의 후 피해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사례**

- A는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쳐서 특수상해죄로 기소
- 피해자 B는 A와 합의 후 법정에서 “A로부터 맞은 적 없고, 자해한 것이다”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
- B는 위증 후 연락처를 변경하고 소재불명 되어 기소중지

IV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, 서울북부지검은 위증 교사범이나 방조범까지도 철저히 밝혀내어 위증사범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고,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. ☑